

## 골드카드제도

해외기술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산업자원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 한국산업기술재단 사무총장 명의의 고용추천장 발급을 통해 특정활동비자(E-7) 발급을 지원하여 출입국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

### ○ 골드카드 E-7 비자의 출입국상 특혜

복수사증 발급, 체류상한기간 **3년**으로 연장, 체류자격외 활동 및 근무처 변경 가능(일반 E-7 : 단수사증, 2년 체류)

### ○ 적용대상 분야(7개 산업분야)

전자상거래(기업정보화, e-비즈니스), 신소재, 수송기계, 디지털전자, **BT, NT**, 환경·에너지

\* **2006년 3월** 중순이후부터 기술경영(마케팅 포함) 전공자도 포함

### ○ 해외기술인력 자격 요건

- 해당분야 **5년**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또는 해당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증 소지자로, 관련업체에서 **2년**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
- 해당분야 석사학위로 소지자(경력無)
- 국내대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(경력無)

제도절차

기업	KOTEF	심의위원회	산업자원부	법무부	해외인력

